



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,
특허로 더하는 행복

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 장 김용선 사무관 강균상	042-481-8180
	2016년 10월 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0월 16일(일) 부터 게재 바랍니다.		

발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

직무발명 대상 확대 및 승계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 추진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선,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개선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0월 18일(화) 오전 10시,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「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」를 개최한다.

□ 이번 개정안에는 ▲직무발명 대상 확대 ▲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▲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.

○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만 포함됐는데,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, 식물신품종을 추가하고,

○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였으며,

-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(설비, 연구비, 급여 등)을 감안하여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.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,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개선했으며,
-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.
-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,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,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, 전문가의 의견발표,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.
-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(8.18 ~ 9.27)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.

※붙임 :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-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(안 제2조, 제10조 및 제13조)
 - 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어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이 회사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승계절차를 개선하고, 직무발명을 위해 장비, 연구비, 급여 등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최소한 통상 실시권을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, 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범위를 확대함.
-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(안 제41조, 제43조, 제46조의 2 등)
 -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정절차를 개선함.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(안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 5)
 - 공공성이 큰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